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7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1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8. 1~8. 31)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8.1	전기토스터	전화	중국에 자체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중국공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나?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8.4	배선기구	내방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은 어느쪽에 있나?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
8.8	배선기구	전화	주로 화재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 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것
8.10	주서기	내방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 사고발생시 보상 해주고,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계약서에 넣으려 하는데, 그 문구를 완전하고 간략하게 만들고 싶음.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좋아야함. 협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 검토중
8.22	전열보오드	내방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만 하고 판매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조립공장에서 PL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조립공장에서 책임지고 후에 해외의 exporter에게 구상권을 가짐
8.25	배선기구		내구연한과 소멸시효	내구연한이 5년정도라 해도 소멸시효의 10년이란 기간은 관리해야함
8.28	전기매트	내방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발생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 안됨
8.29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내방	- 지시, 경고문구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exporter에 대한 구상권 획득 절차	1. 사전상의(PL법 영문판) 2. 계약서 작성 3. L/C상에 명기